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513

발의연월일: 2022. 1. 24.

발 의 자:민홍철·정성호·설 훈

김진표・김병주・양향자

홍영표 • 서삼석 • 김정호

기동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치지역 및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산업기술단지(이하 "산업단지등"이라 함)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되,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함.

그런데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된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액이추징되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자산의 정리, 기업의 정상화 지원 등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인 만큼,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감면 세액의 추징

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산업단지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지라도 한국자산관 리공사가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입한 경우라면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78조제5항제2호). 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8조제5항제2호 중 "매각(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"를 "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."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제78조제5항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
- 나.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) 제78조제5항제2호 단 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자산관리공 사가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78조(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) 제78조(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) ① ~ ④ (생 략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. 1. (생 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 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 각(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 각・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사용하는 경우. 다만, 다음 각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•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경우는 제외한다. 하는 경우 <단서 신설> <신 설> 가.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 관이 환매하는 경우 나.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「한 <신 설> 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수 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경우

⑥ ~ ⑧ (생 략)

⑥ ~ ⑧ (현행과 같음)